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7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08일
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규남, 김영옥, 김원중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박 석, 아이수루, 유정희,
이은림, 이종태, 이효원,
최민규, 황철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2020년 12월 8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임의단체 행태였던 서울시체육회가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되었음.
- 그러나 민선으로 선출된 체육회는 자율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이 부족한 실정이었음.
- 최근,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 등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규정이 신설되었음.
- 이에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(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포함) 등에 대한 재정적 근거 기반을 확보하여 시민 대상 체육진흥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 제6항).

나.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18조 제7항).

다.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, 또는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인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 제8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⑧ 시장은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
2.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원) ① ~ ⑤ (생 략)	제18조(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⑥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 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 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·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 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⑦ 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 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서 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⑧ 시장은 「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</u>

현행	개정안
	<p><u>레」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</u> <u>2.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</u>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8조(지원) 제6항 및 제8항	○	공유재산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세입감소액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상 공유재산(서울시립체육시설) 사용료 전액 감면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18조제8항)

나. 전제

- (감면조건) 시단위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에 해당하며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¹⁾
⇒ 시단위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협회장기 대회로 가정하고 공유재산은 서울시립체육시설로 전제하여 추계
- (수 입 액) 2023년도 시체육회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서울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기준(붙임1 참조)
2023년도 장애인체육회 자체대회 서울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기준(붙임2 참조)
※ 체육시설 사용수요는 추계기간 내 동일함을 전제하여 추계²⁾
- (발생기간)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
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관광체육국 제공자료 활용 등

1) 관련부서 확인결과(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수입은 없었으므로 안 제18조제8항제1호의 해당 사항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⇒ 대부분 서울시와 공동주최에 따라 사용료 미부과 대상으로 확인됨
※ 동 개정안 제18조(지원) ⑧ 시장은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1.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
2.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

2) 향후 무상사용에 따른 수요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확실치않아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218,110천원(연평균 43,622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수입	○ 서울시체육회·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대상 공유재산 전액감면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 (안 제9조)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218,110
	소계(b)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218,110
□ 총 비용(a-b)	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43,622	△218,110

4. 덧붙이는 의견 : 향후 이용빈도에 따라 추계액과 실제 세입감소액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상 공유재산(서울시립체육시설) 사용료 전액 감면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18조제8항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218,110천원(연평균 43,622천원)

$$- 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연평균 세입감소액})_i$$

$i = \text{비용추계 연차}(2025\text{년} \sim 2029\text{년})$

나.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연평균 세입감소액 = 43,622천원
 = 시체육회 협회장기 대회 연평균 수입감소액 + 시장장애인체육회 자체대회 연평균 수입감소액
 = 40,551천원³⁾ + 3,071천원⁴⁾

3) 2023년 기준 7개 단체(붙임1 참조)

4) 2023년 기준 2개 단체(붙임2 참조)

[붙임 1] 시체육회 협회장기 대회 연평균 수입감소액 관련

□ 2023년 협회장기 대회 회원종목단체별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합계

연번	종 목	기 간	장 소	대관료(원)	비 고
1	육상	4.3.(월)~4.5.(수)	목동운동장 주경기장	188,000	시보조금
2	봅슬레이 스켈레톤	6.10.(토)	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	-	
3	배드민턴	9.2.(토)~9.3.(일)	잠실체육관 실내체육관 외 보조경기장 2곳	8,198,600	자체예산, 참가비
4	야구 소프트볼	10.5.(목)~10.20.(금), 11.4.(토)~11.5.(일)	목동야구장	5,881,090	참가비
			구의야구장	1,454,990	
5	빙상	10.22.(일)~10.23.(월), 11.19.(일)~11.20.(월)	목동아이스링크	4,341,354	시보조금, 자체예산
6	축구	11.24.(금)~12.4.(월)	효창운동장	9,796,080	자체예산
			상암보조구장	1,723,510	
7	펜싱	12.2.(토)~12.3.(일)	잠실실내체육관	8,967,550	참가비
합 계				40,551,174	

자료 : 서울시 관광체육국

[붙임 2] 장애인체육회 자체대회 연평균 수입감소액 관련

□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시립체육시설 사용 현황

연번	대회명	종목	기간	장소	대관료(원)	비고
1	시장배대회	론볼	9. 4.(월) ~ 5.(화)	잠실론볼장	0	무상이용
2	서울시장애인 생활체육대회	개폐회식, 농구 등 7종목	10. 13.(금) ~ 15.(일) 대회일: 10. 14.(토)	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	0	무상이용 (공공요금 및 전용사용료 1,242,920원)
3	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	파크골프	8. 31.(목) ~ 9. 1.(금)	월드컵파크골프장	604,800	시비보조금
4	서울국제초청 파크골프대회	파크골프	9. 11.(월) ~ 13.(수)	월드컵파크골프장	2,466,000	시비보조금

자료 : 서울시 관광체육국